

일련번호	친환경양식어업육성
------	-----------

공동생산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장 강미숙 사무관 장석준	044-200-5630 044-200-5635

I. 사업개요

1. 목적

- 기존 굴 양식방법 대비 폐기물 발생 및 부표사용 절감효과가 뛰어나 환경친화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개체굴 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시설 확충
- 다수의 어가가 활용할 수 있는 개체굴 양식을 하기 위한 종자생산시스템,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을 갖춘 공동생산시설 지원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및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친환경 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3.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 개소)

성과지표	2023 목표치	최근 4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19	2020	2021	2022		
친환경 개체굴 공동 생산시설 지원개소	3	-	-	4	3	'23.하반기	사업추진 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6,000	13,300	13,300	0
- 국비	3,000	6,650	6,650	
- 지방비	1,800	3,990	3,990	
- 자부담	1,200	2,660	2,660	

* 지방비와 자부담은 예산액, 사업규모,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공모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관할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굴)를 받아 경영 중인 어업인 또는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다수로 구성된 어업인 공동체

2. 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가. 사업자 및 사업운영

-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장으로 전환하려는 5개 이상의 어가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요재산으로 등록하여 관리가 가능한 시·군·구
- 공모 신청 전까지 공동작업대 규격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광역단체 또는 기초단체 단위 규격설정 가능)

【공동작업대 규격기준 및 운영기준 관련 필수사항】

- ① 공동작업대 구성요소는 친환경 소재로 구성되어야 하며, 미세 플라스틱 발생 등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 호환성, 범용성 등을 감안하여 규격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소수 어가의 독점적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그 외 사업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 선정 공고문에 따름

나.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등 지원제한 기준

①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시·도 또는 시·군·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보조금수령자(민간사업자·지자체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수행대상 배제 또는 수급 제한 기간 경과 시까지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금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자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금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② 지방비 미확보·사업 포기·집행지연 시

- (지방비 미확보) 선정사업에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 포기) 선정사업을 포기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어업인 공동체는 사업포기승인연도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집행지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사업에 대한 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감액조치 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민간사업자 지원사업)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장으로 전환하려는 5개 이상의 어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개체굴 양식을 위한 종자생산시스템,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의 공동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지자체 직접사업)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양식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공동생산시설의 구성요소는 친환경 소재로 구성되어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 소재를 갖춘 개체굴 공동생산시설(종자생산시설,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 제작·설치를 위한 설계, 시설설비 및 정산보고서 검증·회계감사 비용 등
- 토지·부지, 임차 및 운영자금으로는 사용 금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국비50%, 지방비30%, 자부담20% 또는 국비50%, 지방비5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시설당 국비기준 최대 10억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7.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사후관리기간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변동현황 공시 기간	처분제한기간	
- 부동산과 그 종물	최초공시일로부터 10년	취득일로부터 10년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최초공시일로부터 10년	취득일로부터 10년	
-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최초공시일로부터 5년	취득일로부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관리를 아니할 수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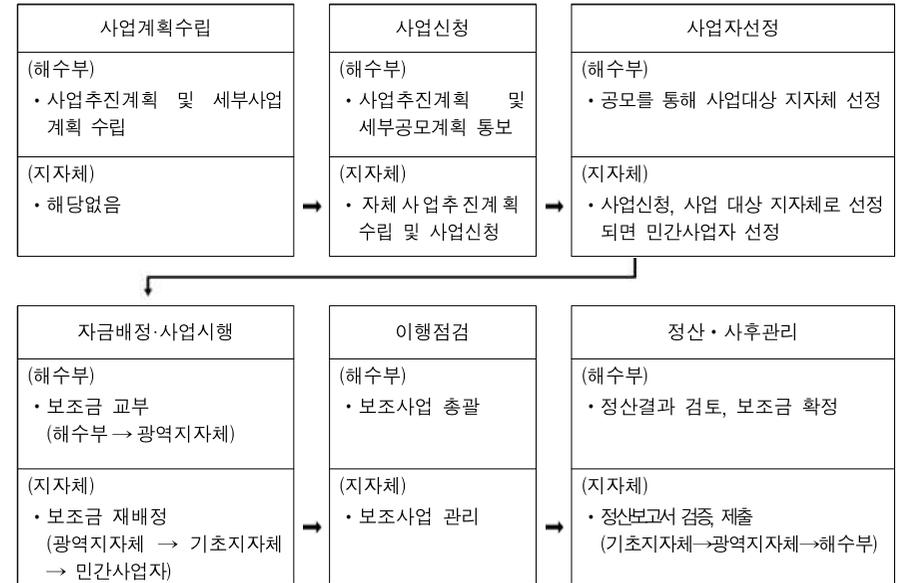
단년도 소모품 성격의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관리를 아니할 수 있음

- 조달청 내용연수에 없는 '그 밖의 기계, 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과 그 중물'에 해당하는 처분제한기간을 적용함

- 부기등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름. 다만, 부기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의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대장(가설건축물 대장 등)에 부기사항을 기재
- 보고 및 공시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름
- 중요재산의 관리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 중요재산의 표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제4항에 따름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의 수립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 전년도에 “공동생산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 및 지자체 통보
- 시행지침 개정(필요시) 통보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 전년도에 “공동생산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 및 지자체 통보

시·도(시·군·구)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II. 1. 사업대상자, 2. 사업선정 제외 대상, 3. 지원대상」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함
 - 사업계획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공동작업대 규격기준 및 운영기준 관련 필수사항】

- ① 공동작업대 구성요소는 친환경 소재로 구성되어야 하며, 미세 플라스틱 발생 등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 호환성, 범용성 등을 감안하여 규격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소수 어가의 독점적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
 - 「II. 3. 지원대상」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함
 - 공모 신청 시 사업에 참여하려는 협의체가 다수인 경우 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향후 사업자변경을 감안하여 예비사업자를 포함하여 순위를 작성할 수 있음

【우선순위 결정】

- ① 다수의 시·군·구가 신청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 결정
- ② 민간 협의체가 다수인 경우 시·군·구에서 우선순위 결정

4.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관련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고된 평가방법에 따라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시·도(시·군·구)

- 민간사업 계획으로 선정된 시·도는 시행지침 및 공고된 기준의 범위내에서 자체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사업자 선정 후 시행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사업의 목적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정한 후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등)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
 -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해수부에서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전에 시·군·구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 선정결과에 따라 시·군·구 예비사업자 우선순위대로 사업 즉시 착수가능
- 시·도(시·군·구)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바탕으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5. 자금배정 단계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함
- 자금배정: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민간사업자
- 사업비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을 사용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중 아래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선으로 따라야함
 -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
 - 정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사항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처분제한 등과 관련된 사항

6. 이행점검단계

《 사업시행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승인 및 교부 결정

시·도(시·군·구)

- 시·도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에서는 사업자,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필요시 해수부 승인)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중도 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 국고 보조금의 변경 없이 사업자(변경사업자가 공모평가 시 우선순위 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사업계획 변경 원칙>

- 변경 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 원칙: 시·군·구는 당초 제출하였던 사업계획 내 사업비 배분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원칙,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모두 준수하여 이행하는 경우만 가능
 - ① 국고보조금 변경 없이 동일 시도에서 사업자 변경하는 경우(변경사업자가 공모평가 시 우선순위 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 해양수산부 보고
 - ② 사업자 변경사항(①해당하는 경우 제외): 시·도지사 사전 검토, 해양수산부 승인
 - ③ 개소당 총 사업비의 10% 이상 사업비 배분변경 : 시·도지사 사전 검토, 해양수산부 승인
 - ④ 개소당 총 사업비의 10% 미만 사업비 배분변경 : 시·도지사 승인, 해양수산부 보고

* 사업계획 변경 시 필수 제출서류: 사업계획 변경사항(상세), 공동체 의견수렴 결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구체적 사업비 집행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기타 타 법령에 따라 사업비 변경 시 필요사항 이행 여부
- 변경 절차:
 - ① 지자체에서는 시도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후 10일내에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 민간사업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연 1회 이상)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에는 집행부진 해소방안 강구

시·도(시·군·구)

- 매월 10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조금 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집행내역
 -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월 집행마감결과의 일치여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에서 자료제공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서식7)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내역을 별도 대장으로 관리
- 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사후관리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함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진행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매칭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하여야 함

《 제재 》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름
 - 보조금의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름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름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름
- 지침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구청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보조금 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사항 협조 : 해양수산부에서 보조사업자들에게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시 행정사항 협조
- 사업 포기 시
 -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발생 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을 받아야 함
 - 사업포기서(사유포함) 및 사업 책임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시·도)를 통해 해양수산부로 포기 승인 요청. 단, 부정수급 등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
 - 포기 승인 시 해당 사업비에 대한 반납 및 정산절차를 조속히 이행

《 사업비 정산 》

공통사항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름
-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집행 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조치

시·도(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추가제출 서류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서식8), 정산서(서식9), 세부집행내역 증빙자료(요청시), 중요재산 등록 및 공시현황, 검증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해당사업에 한함)

보조사업자

- 민간사업자 및 지자체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군·구 또는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중요재산 현황, 중요재산 부기등기 증빙자료, 검증보고서(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민간사업자에 한함), 회계감사 보고서(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민간사업자에 한함)
 - * 검증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받아야 함

IV.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수요조사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 행정지시(통보)에 따르며,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시행지침을 준용함
 -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된 절차와 세부사항은 계약법령, 재정·회계법령, 국토계획법, 건설법령, 환경법령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이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반납서약서

저(성명, 업체명)는 20△△년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기에 친환경양식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보조금 교부조건, 공모계획이나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시행지침이나 교부조건에 명시된 보조사업 반납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반납토록 하겠으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보조사업자	(서명 /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 국고보조 비율 : ○○%
- 사업내용 :

예산과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위반하는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절차 및 양식 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8.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9.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반기에 1회)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별지 제9호 서식】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금 정산서

1.내역사업명:

- 상세사업명(필요 시 기재):

2.작성자: 시·도 과 (직급) (이름)

3.확인자: 시·도 과 (직급) (이름)

4.사업자:

5.사업연도:

6.정산내역(총사업비 기준)

(단위: 원)

세 부 사업명	구 분	예산액	교부결정액	확정신청액	반납액		비고
					집행잔액	이자액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7. 연도 별 집행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반납액		비고
						집행잔액	이자액	
전 체	합 계			-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8. 집행 상세(e-나라도움 상 보조사업 상세 집행내역(증빙포함)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단위: 원)

연번	집행일자	집행비목	거래처명	집행용도	집행금액 (총사업비 기준)	비고
20 년 소계						
20 년 소계						
합 계						

9. 국비 이자산정

(단위: 원, %, 일)

연번	일자	입금액	지출액	잔액	약정금리	보유일자	이자산정액	비고
20 년 소계								
20 년 소계								
합 계								